

제3차 청렴 옴부즈만 회의 개최 결과

□ 목적

-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수범사례 도입이 필요한 조항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며, 금년 실적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함.

□ 제안사항

1. 인사규정 개정(안)

- 제안사유
 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‘승진의 제한(제14조)’ 조항에 대해 포상으로 징계내용을 상계처리하여 승진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을 ‘금품·향응 등 수수 금지’ 위반에 따른 징계시 상계처리 할 수 없도록 규정내용을 강화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제14조(승진의 제한) ②항의 징계내용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을 ‘금품·향응 수수금지’ 위반시 상계처리할 수 없도록 관련 내용을 강화

2.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(안)

- 제안사유
 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패·공익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제4절 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’ 조항에 “신고자 보호 위반”에 대한 징계처분 항목을 추가
 - 제29조(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)을 (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및 신고자 보호 위반자 등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)으로 수정하고 이에 필요한 징계의결 양정기준을 추가

3.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

○ 제안사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함.
 - * 재직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, 예산 목적외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직무별 목록화 근거 명문화 등
- 미래부 감사실의 권고사항에 금품·향응 수수에 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.
 - * 1단계 상향 조정된 징계양정기준 등

○ 주요내용

- 제7조(인사 청탁 등 금지)
 - 외부 인사에 의한 임직원의 취업 청탁 금지 조항 신설
- 제7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
 - 이해관계의 범위에 학연, 지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
- 제9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)
 - 예산의 목적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목록화 근거 조항 신설
- 별표1의 금품·향응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
 -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 상향조정
 - * 파면: 1000만원 이상→500만원 이상 1,000만원이하